

# 근로복지기금 운영규칙 일부개정[안]

## 1. 의결주문

근로복지기금 운영규칙 개정(안)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사유

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규칙 적용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근로복지기금의 적용대상을 다음과 같이 확대하고자 함. (안 제4조)

현 행	개 정 안
상근임원과 정규직원	상근임원과 직원

## 4. 부칙

- 다른 지침의 개정 : 「대학생자녀 학자금 대출 시행지침」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- 신청대상 중 ‘상근임원·정규직원’을 ‘상근임원·직원’으로 한다.
- 시행일 :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구조문대조표

현 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<b>제4조(적용대상)</b>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상근임원과 <u>정규직원</u>(이하 '임·직원'이라 한다)으로 한다.</p> <p>1. <u>상근임원</u></p> <p>2. <u>정규직원</u></p>	<p><b>제4조(적용대상)</b>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상근임원과 <u>직원</u>(이하 '임·직원'이라 한다)으로 한다.</p> <p>1. &lt;삭제&gt;</p> <p>2. &lt;삭제&gt;</p>